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26 발의연월일: 2025. 5. 15.

발 의 자:이해민·조인철·백선희

신장식 · 김준형 · 김선민

서왕진 · 오세희 · 차규근

한준호 · 김영진 · 한민수

이정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 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평가하고"를 "제48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평가하고"로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의 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 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 ③ (생	사업 참여 지원)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키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		
	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u>한다.</u>		
<u>④</u>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	<u>⑦</u>		
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			
한 사유로 <u>제2항 또는 제4항</u>	<u>제2항 또는 제6항</u>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u>평가하고</u> 부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 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 여야 한다.

<신 설>

<u>ਮ</u> ੋ	48조의	의2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평가
하고				

제48조의2(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